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14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6845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사단법인 [redacted]

피 고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7. 2. 23.

판 결 선 고 2017. 3. 23.

주 문

1. 피고가 2015.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가산세(취득세의 신고불성실 · 납부불성실 가산세, 지방교육세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농어촌특별세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합계 14,905,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5.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53,406,030원, 지방교육세 3,051,770원, 농어촌특별세 3,814,7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14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 28. [redacted]시 출신의 대학생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redacted]구 [redacted]동[redacted]가 [redacted] 지상의 [redacted] 건물(이하 '이 사건 장학숙'이라 한다)을 신축·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25. 피고에게 이 사건 장학숙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에 따라 장학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4. 30. 이를 받아들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결정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6. 원고에게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장학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면제한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8. 6. [redacted]시장을 상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하였으나 2015. 9. 24. 불채택되었다.

마. 피고는 2015. 11. 10. 원고에게 이 사건 장학숙에 관하여 위와 같이 면제한 취득세 53,406,030원 및 지방교육세 3,051,770원, 농어촌특별세 3,814,710원, 가산세 14,905,830원(신고불성실 5,340,600원+납부불성실 9,565,230원) 합계 75,178,3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4. 28. 기각되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14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9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주된 사업은 장학사업이고 원고 예산의 대부분은 이 사건 장학숙의 건립 및 운영에 지출되었으므로,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장학단체에 해당한다. 또한 위 규정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고유업무에 제공하는 것 역시 포함하고, 원고는 이 사건 장학숙의 홍보활동 및 행사를 주관하기도 하는 등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장학숙에 관한 취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2) 피고가 2014. 4. 30. 원고에게 장학단체의 고유업무 직접사용 부동산 취득을 이유로 취득세 감면결정을 한 것은 공적견해표명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이에 대한 추가 예산의 배정 및 보조금 신청이나 기부금 모집행위를 중단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감면결정을 신뢰한 원고에게 이미 면제한 취득세 등에 가산세까지 추가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의 취득세 면제대상 해당여부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14

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학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서 설령 원고가 장학단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취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장학숙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1호증 내지 제33호증, 을 제3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장학숙은 신축 당시부터 원고의 지휘, 통제나 관리 및 감독을 받지 않는 제3자인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이하 '춘향장학재단'이라 한다)에 무상공여되어 춘향장학재단이 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장학숙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직접 사용"에 관한 정의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이는 "직접 사용"의 주체는 사용자가 아닌 소유자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취지이고, 다만 사용용도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해당 용도대로 사용하더라도 감면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규정에서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위 개정 법률 제22조 제2항, 제50조 제2항 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14

따라서 위와 같은 법률 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직접 사용"은 개별 규정에서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자신의 사업수행에 스스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용자인 제3자에 대한 지휘, 통제 및 관리 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예외가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② 이 사건 장학숙은 원고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는 하였으나, 취득 당시부터 운영은 춘향장학재단이 하도록 예정되어 있었고, 원고는 2014년 10월경 춘향장학재단과 사이에 '이 사건 장학숙을 2016년 7월 이후 위 재단에 기부채납하고, 기부채납 시까지 위 재단이 무상으로 사용(약정서 작성 전 사용 기간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③ 원고의 전신은 1977. 11. 14.경 발족한 남원군 애향운동본부로서 애향심 고취 및 주민복지향상 등을 위한 공익활동을 하여왔다. 남원시와 남원시가 출연한 춘향장학재단은 2008. 5. 14. 이 사건 장학숙 건립을 목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09년경 남원시 보조금을 주된 재원으로 이 사건 장학숙의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춘향장학재단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 모집의 주체가 될 수 없자 원고를 설립하여 이 사건 장학숙 건립을 위한 기부금품을 모집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2008. 12. 30. 원고에 대한 법인설립허가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2009. 9. 30.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었으며, 2013년경까지 이 사건 장학숙 신축을 위한 기부금을 모집하였다. 이 사건 장학숙의 회계는 원고 고유의 회계와 별도로 관리되고 있다.

④ 이 사건 장학숙이 신축된 2014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장학숙의 입사생 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14

발 및 운영의 주체는 춘향장학재단이었고, 이 사건 장학숙의 운영비용도 춘향장학재단이 부담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장학숙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선발심의위원회에 이사 파견, 견학행사 등 홍보활동, 입사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장학숙에 관한 춘향장학재단의 의사결정 등을 좌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

2) 지방세기본법 제18조의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지방세기본법 제18조는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조세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취득세 면제에 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장학숙에 관하여 '장학단체의 고유업무 직접사용 부동산 취득'을 이유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함에 따라 피고가 이를 승인하여 취득세 감면통지를 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납세의무자로서는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고 과세관청은 제척기간 내에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비과세 결정 등을 번복하고 다시 과세처분을 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감면통지서에 '본 감면결정 이후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사항이 이전의 감면신청서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감면신청을 하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감면신청 이후에 감면받는 목적 또는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 등을 하는 경우' 및 그밖에 다양한 개별적 사례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 외에도 가산세가 추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14

로 추징될 수 있다고 고지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감면통지는 원고가 감면신청 시에 이 사건 장학숙의 사용주체를 제대로 드러내지 않음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장학숙을 취득세 면제 대상으로 고지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으므로, 이를 신뢰할 만한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장학숙을 '장학단체로서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오인하여 취득세(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장학숙 신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어 기부금 모집활동을 하였고, 이 사건 장학숙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장학숙은 학생들로부터 식비 상당의 금액만을 지급 받아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장학단체로서 장학사업의 목적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장학숙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14

취득한 것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었다.

② 원고는 2014. 1. 1. '직접 사용'의 의미에 관하여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직후인 2014년 2월경 이 사건 장학숙을 취득하였는데, 종래 '직접 사용'의 의미를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다소 넓게 인정하는 취지로 보이는 대법원 판결도 존재하였고, 개정 후 법률에 따를 때 '직접 사용'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확립된 과세관행이나 법원의 분명한 판단도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③ 원고와 [redacted]재단은 이 사건 장학숙 설립을 위한 기부금 모금 등 활동을 함께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장학숙을 [redacted]재단의 장학사업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장차 기부채납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춘향장학재단의 이 사건 장학숙 운영을 보조 및 지원하기도 하는 등 통상의 제3자보다 훨씬 밀접한 관계에 있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장학숙에 관한 원고의 취득세 면제 신청을 승인한 후 약 1년 2개월 가량이 지나서야 원고가 장학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위한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는바, 과세관청조차도 직접 사용의 의미를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 중 취득세 53,406,030원, 지방교육세 3,051,770원, 농특세 3,814,71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고, 이들 세목의 각 가산세 합계 14,905,830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결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14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석규

판사 김대원

판사 최선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14

관계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5조(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80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80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학술연구단체 등의 범위)

법 제4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

2. 안전행정부장관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

■ 지방세기본법

제18조(신의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끝.